

“충전기일까? 시계 또는 조명일까?” 관세청, 다기능 복합기기 분류 기준 명확화

- 관세청,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충전기, 시계, 조명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기는 충전기로 분류해 무관세 적용

관세청은 지난 4월 9일(목) 개최된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5월 14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무선 충전 무드등 시계’를 △시계(제9105.11-0000호, 기본 8%)나 △전기식의 조명(제9405.21-0000호, 기본 8%)이 아닌 △배터리 충전기(제8504.40-3010호, WTO양허 0%)로 결정하였다.

< 쟁점물품 >



위원회는 물품의 품명이 “Wireless Desk Station”으로 무선 충전 기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고, 단순 부가 기능인 시계 및 조명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Qi(치) 표준 고속 충전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무선 충전기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무선전력컨소시엄(WPC)이 제정한 자기유도식(패드 접촉식)의 무선충전 국제 표준으로, 전 세계 주요 스마트폰에서 공통으로 사용됨

이번 결정은 다기능 복합 제품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전 시장에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수출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② 다음으로, 수출 물품인 차량 도어에 내장된 스피커 모듈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피커 그릴(덮개)’에 대하여,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제7326.90-9000호, 인도기본 15%·미국품목관세 5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제8302.30-0000호, 인도기본 15%), △스피커의 부분품(제8518.90-9000호, 인도기본 15%),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708.29-0000호, 인도기본 15%·미국품목관세 2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 쟁점물품 >



< 장착 위치 >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스피커 모듈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특정 자동차 차체 규격에 맞추어 제작·장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스피커와는 분리되어 차체의 일부로서 구조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스피커의 부분품’이 아닌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스피커와 차체에 모두 연관된 부품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자동차 부품 수출입 업계의 품목분류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수출입 신고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기존에는 대리인을 통해 사전 심사를 신청한 경우 대리인만 결정서 수령 및 시스템 조회가 가능하였으나, 지난 5월 7일부터는 화주도 직접 현재·과거 결정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처리현황 > 품목분류에서 조회 가능

이어 “오는 6월 중순부터는 화주가 결정서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질 예정”이라며, “이번 개선으로 대리인 변경 등에 따른 정보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업체의 자사 수출입 위험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붙임.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담당 부서	심사국 세원심사과	책임자	과 장	오현진 (042-481-7870)
		담당자	사무관	정상우 (042-481-7642)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Toggle Switch(MT4218)	8536.50-9090 (간이정액환급 10원)
2	Toggle Switch(ST-4103-C3J, ST-5101J)	8536.50-9090 (간이정액환급 10원)
3	Chip Dyed Flim(ST06K-ST16K-ST36K-ST51K)	3920.62-0000 (덤핑 7.31%~36.98%)
4	Insulation Tape(SE62-00055A)	3926.90-9000 (간이정액환급 10원)
5	Insulation Tape(SE62-00079A)	6814.10-0000 (간이정액환급 10원)
6	Insulation Tape(V122-00023A)	3920.20-0000 (간이정액환급 50원)
7	Injector	8543.90-9000 (WTO양허 0%)
8	W507 Speaker Grill Front Door	8708.29-0000 (인도기본 15% ^{미국} 품목관세 25%)
9	MTS MACHINE; MAST(WQ006)	9018.90-8190 (WTO양허 8%)
10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WDS100)	8504.40-3010 (WTO양허 0%)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 ❖ **(기능)**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운영 중.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함
- ❖ **(구성)**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관계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41인으로 위원단 구성.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맡고 있음